

취업규정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휴가일수표(제33조 관련)

특별 휴가일수표(제33조 관련)

구분		대상	일수	
특별 휴가	경조 휴가	결혼	본 인	5
			자 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 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1.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 1]

특별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특별 휴가	경조 휴가	결혼 (생 략)	
		출산 배우자	5
		입양 (생 략)	
		사망 (생 략)	

※비 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
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설>

(개 정 안)

[별표 1] 특별휴가일수표(제33조 관련)

특별 휴가일수표(제33조 관련)

구분		대상	일수
특별 휴가	경조 휴가	결혼 (현행과 같음)	
		출산 배우자	10
		입양 (현행과 같음)	
		사망 (현행과 같음)	

비고

1.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